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16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배준영 · 박대출 · 이상휘  
김종양 · 김은혜 · 안철수  
곽규택 · 김미애 · 서명옥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